

## 목포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8. 7.

제출자 : 목포시장

### 1. 제안사유

- 행정절차법('96. 12. 31, 법률 제5241호)이 19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주차장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- 과징금 처분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(안 제19조 제2항)  
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5. 관계법령 :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

### 6. 관련부서의견 : 해당없음

### 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### 8. 입법예고

- 기 간 : '98. 6. 1 - '98. 6. 22(22일간)
- 결 과 : 의견없음

### 9. 조례·규칙 심의 위원회 : '98. 6. 30 (원안가결)

## 목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9조(과징금 징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9조(과징금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		